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51893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소제인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D(E) 서비스에 대하여 2019. 5. 1.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을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주식회사 F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7. 15. 원고에게 주식회사 F이 폐업하는 순간 위 투자금 1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F이 2018. 12.경 폐업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2019가단5035141)를 제기하여 2019. 5. 2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5. 1. 피고와 자신이 운영하던 D(E) 영업 부분을 대금 5,1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당시 D의 운영과 관련된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D를 양도하면서 위 운영과 관련된 물류창고 등도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소, 대표이사, 대표전화, 이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D의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영업재산을 양도한 후 본점 주소를 이전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직원들을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D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더라도 다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써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4, 6, 7,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는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는 상당한 가액의 재고자산과 매출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H은행장, I은행장,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으로 무자력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에게 D 영업 자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가액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된 수익의 원천인 홈페이지, 고객정보, 재고자산, 물류창고 등의 재산을 이전받았고,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새롭게 추가한 위 청구의 당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조정기일 1회와 2021. 4. 13.까지 4회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2020. 10. 13. 3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2020. 11. 27.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어 2021. 4. 13. 4회 변론기일 후 다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는 2021. 5. 11.에야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긴밀한 관계로 악의의 채권자이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영업상 채무가 아니라고 적극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에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원고가 약의의 채권자인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영업상 채무인지 등을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